

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85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11. 박태훈의원 외 5인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6. 12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6. 18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의회전문위원 직렬이 행정직만으로 되어 있어 각종 공사관련 의정활동 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기 위하여
-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성군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 중 의회사무과 5급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 3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2명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으로 개정하였으며,
-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토목사무관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개정하기 위함.
- 동규칙 별표 “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문위원”을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명칭과 맞게 “의회운영위원회 및 의회운영전문위원”으로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동규칙 [별표] 전문위원별직급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 중 현행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”으로 개정
나. 동규칙 [별표] “운영위원회” “운영전문위원”을 각각 “의회운영위원회” “의회운영전문위원”으로 개정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규칙 개정안은 의회전문위원이 행정직렬로만 되어있어 각종 공사 관련 의정활동시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토목직사무관도 의회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별표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
- 동규칙 별표 “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문위원”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한 명칭과 같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성군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 3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2명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으로 기 조정되었고 의회 운영위원회 명칭 또한 상위 조례의 정한바에 따르므로 동규칙 개정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6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